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
	2211

제안연월일 : 2021년 2월 26일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, 일부 문구조정을 위해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소위원회의 구성방안을 규정함(안 제8조제4호 수정)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8조제4호의 "그 외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"를 "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"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
제8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업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제8조(소위원회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	제8조(소위원회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<신 설>	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	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
<신 설>	2. 서울시민복지기준	2. 서울시민복지기준
<신 설>	3. 사회복지법인 외부 이사 추천	3. 사회복지법인 외부 이사 추천
<신 설>	4. 그 외에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	4.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”를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
2. 서울시민복지기준
3.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
4.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수 정 안
제8조(소위원회) ① 위원회는 업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	제8조(소위원회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한다.
<신 설>	1.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
<신 설>	2. 서울시민복지기준
<신 설>	3.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
<신 설>	4.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항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